

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· 관리에 관한 사무
 4.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
 5.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
 6.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
 7.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
 - 7의2.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
 8.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
 - 8의2.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
 9. 법 제32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
 10. 법 제38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일 통지 등에 관한 사무
 - 10의2.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
 - 10의3.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
 - 10의4.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
 11. 법 제51조의4 및 제51조의5에 따른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확 인에 관한 사무
 12. 삭제 <2014. 11. 28.>
 13. 법 제51조의9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사무
 - 13의2. 법 제56조 단서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에 관한 사무
 14. 법 제59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 등에 관한 사무
- ② 연합회 또는 법 제51조의2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 제51조 또는 제51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 11. 28.>
- [본조신설 2012. 4. 20.]

제15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 · 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(법 제47조의2제4항,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 · 재위임 또는 위탁받는 자를 포함하며, 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의 경우 군수는 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) 및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(적재물배상책임 공제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3. 23., 2013. 6. 11., 2014. 11. 28., 2015. 12. 22., 2017. 3. 27., 2019. 6. 25., 2020. 6. 16., 2025. 10. 28.>

1.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
- 1의2. 법 제5조의14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의 신고에 관한 사무
2. 법 제8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사무
3.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안전 기록 · 관리에 관한 사무
4. 법 제16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에 관한 사무
5. 법 제1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에 관한 사무
6. 법 제1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
7. 법 제23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관한 사무
- 7의2. 법 제24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
8. 법 제27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사무
- 8의2.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